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96

발의연월일: 2022. 10. 31.

발 의 자:이용빈・김성환・김승남

김홍걸 · 서영교 · 안규백

윤영덕 • 이용선 • 조오섭

홍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새로운 전기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신사업으로 정의하고, 해당 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개시하고 전기신사업 약관은 인가없이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사업·구역전기사업등 전기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음.

그런데 최근 전력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재생에 너지를 사용한 전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의 특징인 간헐성 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기저장장치 (ESS)에 저장한 후에 다시 전력시장,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 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동 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에 대하여 전기신사업에 포함시켜 동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 대하여는 전기공급 약관은 신고하도록 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잉여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4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2 중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의3 중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거장판매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거장판매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거장판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8 중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이하"재생에너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의10 및 제12호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의10.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 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12의11.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14조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 저장판매사업자"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제2호다목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한다.

제16조의5의 제목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사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 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수요자에게 공급하지 못할 경우 폐기하게 되는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	9	
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		
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재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재생	
<u>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u> 은 제	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	
외한다)을 말한다.	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	12의2	
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	소규모 <u>전력</u>	
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	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	
<u>공급사업</u> 을 말한다.	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	
	<u> 장판매사업</u>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	12의3	
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	<u>소규모전</u>	
력중개사업자 및 재생에너지	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	
<u>전기공급사업자</u> 를 말한다.	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자	
12의4. ~ 12의7. (생 략)	12의4. ~ 12의7. (현행과 같음)	
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	12의8	

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 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 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9. (생략) <신 설>

<신 설>

13. ~ 21. (생략)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 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

	<u>재</u>
생에너지(이하 "	재생에너지"
라 한다)	

12의9. (현행과 같음)

12의10.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 매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 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11.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 매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 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 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 21. (현행과 같음) -----전기자 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 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 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 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u>기저장판매사업자</u>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 조 고 등) ①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른 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생략)
 - 2. 다음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가.·나. (생략)
 - 다. <u>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u>
 <u>자</u>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 3. ~ 6. (생 략)
 - ④ ~ ⑧ (생 략)
-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 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 업자 등의 전기공급) ① 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 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u> 기서상판매사업사</u>
·.
세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
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3
1. (현행과 같음)
2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
<u> 장판매사업자</u>
3. ~ 6.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세16조의5( <u>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u>
<u>업자 등</u> 의 전기공급) ① <u>재생</u>
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라 <u>재생에너지전</u> <u>기공급사업자</u>가 전기사용자에 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 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 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② -----재생에너지전 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 기저장판매사업자---------. 다만, 재생에 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 를 전기수요자에게 공급하지 못할 경우 폐기하게 되는 전기 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생략)